

제 10회 보건복지부 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 대회규정

제1조(명칭) 본 대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기 전국한의사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주최, 주관) 본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한의사회가 주관한다.

제3조(대회 개최) 본 대회는 2018년 9월 30일(일)에 인천지부 송도에서 개최한다.

제4조(조직위원회) 본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위원회를 둔다.

1. 대회장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2. 조직위원장 :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회장
3. 조직위원(10인 이내) :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담당 임원, 축구 전문 인사 등으로 인천광역시 한의사회장이 구성한다.

조직위원회 산하에 실무적인 준비 및 협의를 위하여 중앙회 총무이사,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담당임원 및 각 팀 대표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5조(참가팀 자격 및 참가 신청) 본 대회 참가팀은 대한 한의사협회 16개 지부 대표팀으로 한다. 선수는 2018년 8월 31일 기준 해당지부 한의사회에 소속된 회원 또는 해당지부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한의사 및 군의관으로 2년 이상 회비(회비라 함은 연회비, 입회비, 기타부담금까지 모두 포함)를 체납하지 않은 회원에 한하며, 2018년 8월 31일까지 선수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군 의무 복무하는 회원의 경우 복무기간동안 입회비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 동안에 한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선수단은 단장 1명, 감독 1명, 주무 1명, 선수 최소 15명 이상 최대 25명 이내로 하여 인천지부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선수단은 전부 한의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대회의 취소) 본 대회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회의 승인 하에 대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경기규칙) 본 대회의 경기는 본 규정과 대한축구협회의 경기규칙에 따르되, 특별한 사항 발생 시에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8조(경기방식, 대진, 일정) 본 대회는 예선 3개조 조별 리그 후 각조 1위 및 와일드카드로 구성된 본선 4강 토너먼트제로 한다.

조 추첨은 전국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논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 한다.

조 추첨은 직전 대회 성적 기준으로 1,2,3,등을 한 지부를 각각 1,2,3등 순으로 1,2,3조에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등에서 15등까지의 지부는 추첨을 통해 조별 시드 배정을 한다.

경기 일정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경기시간) 본 대회의 경기시간은 다음과 같다.

예선 및 준결승은 전, 후반 구분 없이 25분으로 한다.

결승전 및 3,4위전은 전, 후반 구분 없이 30분으로 한다.

예선 및 4강, 3-4위전은 무승부 시 연장전은 없다. 다만, 4강, 3-4위전은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부를 정한다.

결승은 무승부 시 연장단판 10분 골든골제로 한다. 연장까지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부를 정한다.

제10조(리그전의 승점 및 승자 결정 방식) 본 대회의 리그전에서 승점은 승리 3점, 무승부 1점, 패 0점으로 한다.

승점이 같을 경우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페어플레이(경고1점, 경고누적퇴장3점, 즉시퇴장4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와일드카드는 각조 2위중 최고 승점팀으로 한다.

준결승의 대진은 각조 1위중 최고 승점팀과 와일드카드, 그리고 나머지 조 1위 팀으로 진행한다. 단 와일드 카드팀과 최고 승점팀이 같은 조인 경우, 와일드 카드팀과 각조 1위중 차순위 승점팀과 경기한다.

제11조(토너먼트전의 승자 결정 방식)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제12조(선수의 출전)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시작 20분 전까지 출전선수 11명의 명단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전선수 연령별 구성은 20대-1명, 30대-5명, 40대-3명, 50대 이상-1명
으로 한다. (단, 연령별 선수구성이 어려울 시에는 연령층이 높은 선수가 낮은 연령층 선수로 출전이 가능하며, 골키퍼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선수 연령 기준은 한국 나이로 하며,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 공지한다.

20대 : 1990년 이후 출생한 자.

30대 :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출생한 자.

40대 :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출생한 자.

50대 이상: 1969년 이전 출생한 자.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선수는 본 대회 조직위원회에 사전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

근무처 기준 지부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근무처가 없을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한다.(등록일 기준이며, 경기당일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선수등록부와 신분증의 대조로 출전선수 자격을 확인하며, 선수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수는 출전을 금지한다.

출전 선수 명단에 기재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한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가 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수 교체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기 출전 개시 후 10분 이내에 출전하지 않으면 자동기권으로 몰수패(0:3) 처리한다.

제13조(선수 교체) 경기 중에는 3명의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단 결승전 연장 시에는 추가 2명의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교체되어 나간 선수는 해당 경기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선수의 교체 시에도 경기 중인 선수는 20대-1명, 30대-5명, 40대-3명, 50대 이상-1명을 유지해야한다. (단, 연령별 선수구성이 어려울 시에는 연령 층이 높은 선수가 낮은 연령층 선수로 출전이 가능하며, 골키퍼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4조(재경기 실시) 경기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재경기 여부를 결정한다.

재경기시 이전 경기에서의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제15조(선수 및 팀에 대한 처벌)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팀은 몰수패 처리하고, 상대팀의 3:0승으로 하되, 이미 경기를 진행하여 3골차 이상의 스코어일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한다.

부정선수가 의심될 때에는 반드시 경기가 끝나기 전에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심판은 이의제기 접수 즉시 경기를 일시 중단하고, 대회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인 후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경기 종료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한 경기에서 2회 경고 받은 선수는 곧바로 퇴장조치 하며,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경기 중 1회 경고를 받은 선수가 바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1회 경고를 받은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경고를 받게 되면 누적경고 2회가 되어 다음 한 경기를 뛸 수 없다.

경기 도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팀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하고 경기에 임하지 않을 때에는 기권으로 처리하며, 상대팀의 3:0승으로 하되, 이미 경기를 진행하여 3골차 이상의 스코어일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한다.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16조(심판) 심판은 대한축구협회 또는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심판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 페어플레이상

개인상 : MVP, 득점왕, 야신상(골키퍼).

제18조(기타 유의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유니폼의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오른쪽 팀이 보조 조끼를 착용한다.

선수는 신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모든 이의제기는 반드시 경기 종료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경기 종료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참가팀은 대회 개막전에 숙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대회 기간 중의 연락처를 대회 조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팀의 임원과 선수는 관중석을 제외한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의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장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조직위원회는 별도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다. 상해보험 가입은 각 팀에서 가입하도록 한다.

시상식에는 해당 팀과 수상자가 필히 참석해야 한다.

본 대회 우승팀은 장관기를 보관하였다가 다음 대회 때 주최 측에 반납해야 한다. 보관 도중 파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해당 팀이 이를 보상한다.

제19조(보칙) 본 대회규정은 반드시 각 참가팀에 통보되어야 한다.

본 규정의 개정은 대회 조직위원회의 개정안을 시도지부장협의체가 승인하는 즉시 효력을 지닌다.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